

● 제30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20]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2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22]
검 토 보 고 서

2021. 4. 23.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조상호, 박기재, 김경영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320, 2321, 2322

I. 조례안 개요

1.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의안번호 : 2320
- 나. 제 안 자 : 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외 9명)
- 다. 제출일자 : 2021년 4월 2일
- 라.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가. 의안번호 : 2321
- 가. 제 안 자 : 박기재 의원 대표발의(외 13명)
- 나. 제출일자 : 2021년 4월 2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3.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가. 의안번호 : 2322
- 가. 제 안 자 : 김경영 의원 대표발의(외 9명)
- 나. 제출일자 : 2021년 4월 2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II. 제안이유

1.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서비스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3.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재단의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함
(안 제15조제2항)
- 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안 제15조제3항)

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를 규정함 (안 제13조)
- 나. 사회서비스원의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3.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재단의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함
(안 제16조제2항)

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안 제16조제3항)

IV. 참고사항

1.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V.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9.12.3) 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정책실 산하 출연기관¹⁾의 결산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및 결산서 제출사항을 명확화 하고자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의안번호 2320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복지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이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였던 것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제15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²⁾를 반영하려는 것임.

1)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 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 또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³⁾에 따르면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제15조제3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략)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u>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u>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번호 232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를 규정하여 제13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임.
-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14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임.

3)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

- ①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4) 의거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등 작성 및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성립 및 변경 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3조(사업연도) <u>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u>
<신 설>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u>사회서비스원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u>

4)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13조 ~ 제17조 (생략)</p>	<p>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 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p> <p>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p> <p>③ 사회서비스원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5조 ~ 제19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p>
-------------------------	--

- 의안번호 2322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였던 것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제16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반영하려는 것임.
- 또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르면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제16조제3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략)</p> <p>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u>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u>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2. 3. (생략)</p> <p><u><신설></u></p>	<p>제16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u> ----- -----.</p> <p>1. 2. 3. (현행과 같음)</p> <p>③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u>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u>하여야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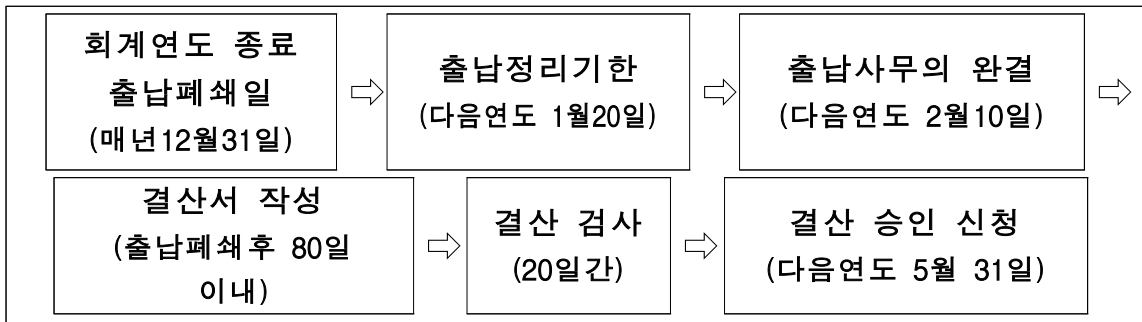
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하면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예산의 성립 및 변경 시에는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및 결산서 제출은 기 진행 중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지방회계법」 제7조⁵⁾에서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

5)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나는 날 폐쇄하고, 출납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에의 결산 승인 신청은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의 결산서 작성 기한을 기존의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의 결산 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타당하다 할 것임.



〈그림〉 지방자치단체 결산 기한

다.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 동의

-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19.12월)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시의회 제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 1.~3. (생략)
- ② (생략)
-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3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결산서 제출 기한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결산 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의회의 견제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이 존재한다 할 것임.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및 결산서 제출은 상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 쟁점사항은 없음.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체계를 명확히 확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문 의 처

허아름 입법조사관 (02-2180-8145)